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96호

『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4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함.
- 나. 시설물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점 도래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 시설 위탁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 등)

나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위탁기관의 대상을 정의에 맞게 용어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.
(안 제7조)

다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사용할 때에는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”을 “변경할 경우에는”으로, “의거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가능여부”를 “가능 여부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발급하여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호까지에서 규정한”을 “제4호까지의”로, “사용에 관하여는”을 “사용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단체 등에게”를 “법인·단체에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탁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위탁받은 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는 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제8조 중 “수탁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수탁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탁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”를 “범위에서 수탁기관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시설의 사용) 제물포구락부(이하 “구락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	제2조(시설의 사용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기타</u>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사용허가) ①구락부 시설을 <u>사용하고자 하는 자는</u> 별지 제1호 서식에 <u>의한</u>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<u>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</u> 별지 제2호서식에 <u>의거</u>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4조(사용허가) ① ----- --- <u>사용할 때에는</u>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 <u>변경할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
②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따라</u>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<u>가능여부</u> 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	②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가능여부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에 <u>의한</u> 사용 또는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제5조(사용료) ①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<u>제4호까지에서</u> 규정한 목적 외에 일반인의 <u>사용에 관하여</u>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사용료의 부과·징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제6조(휴관) 구락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구락부를 <u>단체</u>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위탁을 받은 <u>단체 등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</u>은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	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발급하여야</u> 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5조(사용료) ① ----- ---- <u>제4호까지의</u> ----- ----- <u>사용은</u> ----- -----. ②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 제6조(휴관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- ----- <u>법인·단체에</u> ---- ----- -----. ② <u>제1항에 따라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위탁받은 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</u>

현행	개정안
는다. ③수탁자는 타인에게 관리·운영 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 제8조(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)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구락 부와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. 제9조(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수탁 받은 재산 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제10조(위탁관리의 취소) 시장은 수 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 소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	한다)는 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 다. ③ 수탁기관은 ----- ----- -----. 제8조(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) 수탁기관은 ----- ----- -----. 제9조(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) 수탁기관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0조(위탁관리의 취소) ----- 수탁기관이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4. <u>기타</u>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제11조(경비의 보조) 시장은 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<u>범위</u> <u>안에서</u>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 다.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.	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제11조(경비의 보조)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수탁기관에 ----- -----. 제12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- 제2조(정의) - 제9조(협약체결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지방자치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